

「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6월 9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6월 18일

제2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

### 나. 제안이유

- 장난감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회원가입 및 연회비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다. 주요내용

- 1) 회원의 정의 및 통합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5조)
- 2) 연회비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  - 가) 시설회원 연회비 인하 : (당초) 50,000원 → (변경) 30,000원
  - 나) 연회비 체계 일원화를 위한 예외 규정 삭제, 연회비 면제 규정 정비
- 3)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 정비(안 제13조, 제18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- 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장난감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회원가입 및 연회비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각 지점별로 분리되어 있던 회원 체계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‘통합회원’으로 재정립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,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아울러 시설회원의 연회비를 인하하고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보육시설과 사회적 배려 계층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실효성 있는 보육 지원 대책으로 사료됨.
- 다만,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4개 지점의 분산된 회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